대학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전문개정 2019.04.17. 개정 2019.09.16. 개정 2022.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 ① 대학 특성화 계획
- ②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시설계획
- ③ 대학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19.09.16.>
- ④ 기타 대학발전에 관련된 중요사안의 계획<항 옮김 ③ → ④ 2019.09.16.>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3.04.>
-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04.>

제4조 (임기)

- 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등 지원)

-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